청주개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6.14)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청약 가능, 현장접수 불가]

1. 건설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80-1(충북대학교 개신캠퍼스 내) 행복주택 188호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발표 및 계약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개신 행복주택은 LH가 건설하여 충북대학교에 기부채납 한 후 충북대학교로부터 행복주택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LH에서 운영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이 공급되며 공가가 없을시 수개월~1년이상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주개신 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 (2024.06.1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대학생 계층

공급구분	신청자격	자격요건
0 서고그	대학생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우선공급	취업준비생	충북대학교 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이바고그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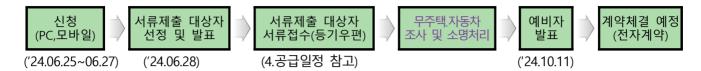
■ 입주자격 완화(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구 분	완 화 내 용
•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 자산요건	자산요건 배제

■ 필수 유의사항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mark>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mark>,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로만 받습니다.
- 신청하는 주택형별(14m² 또는 26m²)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2. 임대대상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개신 행복주택의 교육연구시설(상담실, 사무실)은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입주민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6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주개신 행복주택은 층별로 남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공급됨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신청형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이후 예비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비자는 신청형별로 별도 관리되며, 즉시 입주 또는 해당 신청 형별 공가 발생 정도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자세한 일정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m² 셰어형 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 ① 26m² 셰어형주택은 1호(戶) 내 2인이 실(室)별로 거주합니다.
- ② 실(室)별 청약은 불가하며, 추첨으로 실(室)이 결정됩니다.
- ③ 실(室)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며, 26m² 셰어형 전체 계약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室)별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④ 관리비는 실(室)별 부과될 예정이며 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 등 공과금 사용량은 실별 계약면적 에 비례하여 고지합니다.
- ⑤ 아파트 난방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방식이며, 입주자가 직접 가스공급 업체에 연락하여 공급받아야 하며, 도시가스 연결 및 사용료는 공동거주자들 상호간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⑥ 공동거주로 인한 관리비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소 및 당사자 간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7771	FILTI		세대 당	계약면	(m²)	
주택 청병	공급	신청형별	금회모집인원		공가 호수	대기 예비자	주거	주거	그! 공용	밖의 면적	농나기
형별	대상		우선공급 (충북대)	일반 공급	(06.12 기준)	(06.12 기준)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14A(일반-남)	-	20	9	_					
	대학생	14A(일반-여)	-	20	10	_	14.9900 1			-	
	대학경	14A(충북대 우선-남)	15		7	-		11.6177			
		14A(충북대 우선-여)	5		1	-			4.8847		31.4924
14m²		14B (일반 주거약자-남)	-	5	2	-					
	대학생 (주거	14B (일반 주거약자-여)	-	5	2	-					
	(<u>누</u> 기 약자)	14B (충북대 우선 주거약자-남)	5	-	2	-					
		14B (충북대 우선 주거약자-여)	3	-	1	-					
26㎡ (셰어형) 대학생	디하새	26A (셰어형 충북대 우선-남)	30	-	23	_	26 0000	20 0402	0 7657		E6 E1 40
	26A (셰어형 충북대 우선-여)	30	-	21	-	26.9000	20.0463	0.7057	1	56.5140	

- ※ 상기 26m² 셰어형 주택의 모집인원은 실별 거주인원(실별 2인)을 반영하였습니다.
- ※ 신청형별로 아래 해당 신청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형별	신청형별	신청대상
	14A(일반-남)	3-2. 대학생 계층(<mark>일반공급</mark>)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남자
	14A(일반-여)	3-2. 대학생 계층(<mark>일반공급</mark>)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여자
	14A(충북대 우선-남)	3-1. 대학생 계층(충북대학교 우선공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남자
	14A(충북대 우선-여)	3-1. 대학생 계층(충북대학교 우선공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여자
14m²	14B (일반 주거약자-남)	3-2. 대학생 계층(일반공급) 및 <mark>주거약자</mark>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남 자
	14B (일반 주거약자-여)	3-2. 대학생 계층(일반공급) 및 <mark>주거약자</mark>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여자
	14B (충북대 우선 주거약자-남)	3-1. 대학생 계층(<mark>충북대학교 우선공급)</mark> 및 <mark>주거약자</mark>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남자
	14B (충북대 우선 주거약자-여)	3-1. 대학생 계층(<mark>충북대학교 우선공급)</mark> 및 <mark>주거약자</mark>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여 자
26m²	26A (셰어형 충북대 우선-남)	3-1. 대학생 계층(충북대학교 우선공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남자
(셰어형)	26A (셰어형 충북대 우선-여)	3-1. 대학생 계층(충북대학교 우선공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여자

※ 26m² 셰어형 주택은 각 세대내 "A" 와 "B"실로 구분되며, 실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시]

		세대 당 계약면적(m²)						
	동호	줘ᅯᄋ	スコフロ	그 밖의	ᄎᄓ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101동 401호		26.9000	20.8483	8.7657	-	56.5140		
	101동 401- A	13.4500	10.4242	4.3828	-	28.2570		
	101동 401- B	13.4500	10.4241	4.3829	-	28.2570		

- * 실별 위치 등은 동호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대학생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청주개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회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염제후유의증 등 환자자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염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轉數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구조 및 난방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도시가스 개별난방 방식이며, 입주자가 직접 가스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충북대학교에 배정된 우선공급 호수는 아래 자격 요건 3-1. 대학생 계층(충북대학교 우선공급) 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호수는 3-2. 대학생 계층(일반공급) 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충북대학교 학생도 신청가능하나 우선 공급과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은 14㎡의 주택에는 2구형 가스쿡탑, 일반냉장고, 냉장고장, 옷장, 책상이 26㎡의 주택에는 2구형 가스쿡탑, 옷장, 소형냉장고가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별		임대조건					전환가능	최대 전환 시									
		임	<u>년</u>)	월		보증금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	임대료 (원)	한도액 (원)		임대 보 증금 (원)	월 임대료 (원)								
1.	1.4.2		13,082,000 700,000 12,	12,382,000	74,880	(+)	2,000,000	15,082,000	63,210								
14m²		13,002,000		12,302,000		(-)	10,000,000	3,082,000	104,040								
26m²	1이 기즈	10.052.500	~ 10.002.000 CO0.000 0.002.000	600,000 0,552,500	500 600 000 0 51	600,000 0,552,500	600,000 0,552,500	600,000 0,552,500	0.552.500	0.552.500	0.552.500	600,000 0,552,500	60.090	(+)	5,000,000	15,652,500	31,810
(셰어형)	1인 기준	10,652,500 600,000 9,552,500		9,332,300	60,980	(-)	8,500,000	2,152,500	85,77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6.14)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 관리비 및 개별사용 공과금 등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무주택자로서 금회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인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3-1. 대학생 계층(충북대학교 우선공급)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14) 현재, <mark>무주택자</mark>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⑨와 ②~③, 취업준비생은 ①-⑩와 ②~③)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대학생)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충북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과) (취업준비생)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배점

항목	3점	1점
대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혼 등의 사유)이 청주 시 및 연접지역(진천, 보은, 증평, 괴산, 대전광역 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혼 등의 사유)이 청주시외에 거주
취 업 준비생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예비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대학생 계층(일반공급)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14)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⑨와 ②~③, 취업준비생은 ①-⑪와 ②~③)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충북 진천, 보은, 증평, 괴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자(1순위 지역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예비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일정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류 제출대상자	예비입주자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기간	당첨 발표	계약체결
우선 공급	'24.06.25.(화) 10:00~ '24.06.27.(목) 17:00	'24.06.28(금)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 24.07.0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24.10.11(금)	추후
	※ 인터넷(PC)·모바일 신청 * 24시간 기능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제출 : *일반우편 불가	(17:00이후)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당첨자 개별안내 (전자계약)
일반 공급	(단 시작일과 미감일 제외) 상담:1670-0003	청약→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대상자명단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8층 LH충북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청주개신행복주택담당자 앞	* ARS(1661-7700)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명칭:LH청약플러스)로만 받습니다.
-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는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전산추첨으로 대상자 확정됩니다.
-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내부절차 사정 등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입주자격 완화 : 소득, 자산 배제)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가 무주택 및 자동차 미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자동차)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o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o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o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o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u>누락 등 착오입력에</u>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o기타사항

-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6.25.(화) 10:00시부터 24.06.27.(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u>접수시작일 24.06.25.(화) 10:00시부터 24.06.27.(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 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u>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 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4.6.28(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4.7.3]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u>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u>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8층 LH충북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청주개신행복주택담당자 앞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6.1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 내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충북대학교 우선공급신청시 본인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충북대학교 우선공급신청시 부모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각 1통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 추가 제출서류

-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중인자 :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 및 복학예정각서(공사양식)제출 →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무청

6.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예비입주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

■ 계약안내 : 추후 개별안내 (전자계약)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준)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u>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u> 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되며,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ㅇ 전자 계약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개인별 가상계좌, 전자계약 기간 및 전자계약 상 세절차는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우편 안내 예정)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	분	산정방법
소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장 자 산	자 동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 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 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수늨ㅣ゙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정 자료

	주택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 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大工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ㅏ산 산정 시 자산금액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ㅁ੪ㅇㅗ ㅗ푀ㄹ쒸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합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 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대학생	최대 거주기간 6년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 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 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이 주택의 입주자(대학생 계층)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 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신청자격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대학생 1인 1주택 가능)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 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 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예비자발표 및 계약안내

금지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 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 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 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의 남서쪽에는 충북대학교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 충북대 연결통로는 외부계단과 E/V를 이용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 본 지구의 북동쪽으로는 원룸 및 다세대 주택과 상가건물이 밀집하여 있습니다.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진입도로는 10M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개신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 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건물 및 도로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지구 및 단지특성

- 옥외 정화조 설치로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호~4호 라인 세대의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의 출입구 최상층부에는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주개신 행복주택 내 입주자 공용시설이 아닌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시설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하주차장 램프나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개별난방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 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 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발전기실의 환기를 위한 팬룸과 팬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등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발코니 섀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 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1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14대(교육연구시설 1대 포함)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26m²셰어형의 경우 책상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룸카펫 및 벽타일 등은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의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 개시일이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결로 및 결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으며,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발코니는 소형세탁기(용량9kg, 너비630mm))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나, 각 타입별 발코니면적 차이 및 세탁기 제품 규격차이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세대 내부 에어컨은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설치공간만 제공하고, 매입형 냉매배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설치 시 입주자 부담)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는 150세대로 해당사항 없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장 제58조)

	의무사항		내용
	단열조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설치
건축	바닥난방의 단열재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설치
	방습층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설치
기계	설계용 외기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설치
	고효율 전동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적용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설치
전기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감리금액(천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엔에스건설 대화건설(주) ㈜태화건설 동명건설(주)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 합건축사사무소 (주)금정이엔씨	1,298,155

1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아래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바닥 단차 줄임	
연판	안전 손잡이	
 거실	야간 센서등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기본 설치품목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욕실	좌변기 안전 손잡이	
	욕실문 개폐방향(밖여닫이)	

※ 2020년 8월 준공으로, 추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행복주택) 모바일(APP명칭: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청약신청(행복주택)	

2024. 06.14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신청단지 :	[신청형별	m²] [접수번호 :
신 청 자 :	신청계층 :	~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u>청약신청일로부터</u>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 전대 확인
-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u>국토교통부장관</u>	<u>주택소유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u>주택, 소득 및 자산,</u> <u>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청약신청일로부터
<u>사회보장정보원</u>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u>한국부동산원</u>	<u>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u> (가입은행, 계좌번호, <u>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u>)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u>5년</u>
<u>전산관리지정기관</u>	<u>임차인 중복계약 및</u>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 .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NO LIC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인)

2024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 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3] 각서(복학예정인 자로 대학생 계층에 공급신청하는 자)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0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0 대 학 명: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u>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u>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각서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